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48
------------	------

발의연월일 : 2016. 11. 24.

발 의 자 : 박광온 · 윤관석 · 권미혁

박완주 · 김해영 · 강병원

서영교 · 김상희 · 전혜숙

도종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현행법상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항제2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p> <p>1. (생략) 2. <u>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u> 3. ~ 12. (생략) ② · ③ (생략)</p>	<p>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견인</u> 3.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